#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94

발의연월일: 2024. 11. 14.

발 의 자:이강일·강득구·강준현

김남희 · 김우영 · 민병덕

박상혁 · 염태영 · 이언주

정성호 · 정준호 · 천준호

천하람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위탁단체가 후보자를 위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하면 관할위원회가 3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탁단체의 선거기간은 짧은 경우가 많아 후보자가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받아도 실제 이를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기간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후보자가 아닌 예비후보자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요 청할 수 있도록 하되, 예비후보자가 요청한 때에는 후보자등록을 한 이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제1항 및 제5항 단서 신설).

#### 법률 제 호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1항 중 "후보자는"을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관할 위원회는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신청한 때에 해당 위탁단체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30조의3(선거운동을 위한 휴대 제30조의3(선거운동을 위한 휴대 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① 후 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① 후 보자는 제28조에 따른 선거운 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동을 하기 위하여 해당 위탁단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체에 그 구성원의 이동전화번 호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생 성한 번호(이하 "휴대전화 가 상번호"라 한다)를 이동통신사 업자로부터 제공받아 후보자에 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이동통신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 청서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 호를 생성하여 유효기간을 설 정한 다음 관할위원회를 경유 하여 해당 위탁단체에 제공하 여야 한다. <단서 신설> ----. 다만, 예비후보자가 휴대 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을 요청 한 경우 관할위원회는 예비후

|             | 보자가 후보자등록을 신청한  |
|-------------|-----------------|
|             | 때에 해당 위탁단체에 휴대전 |
|             | 화 가상번호를 제공하여야 한 |
|             | <u>다.</u>       |
| ⑥ ~ ⑫ (생 략) | ⑥ ~ ⑫ (현행과 같음)  |